

의안번호	2211258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5.08.18.
추계번호	25C3625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수)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대 환자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함(제1항) ○ 간호사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간호사 대 환자 수(안 제29조)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을 명시하고 있으나¹⁾, 이는 단순 정원에 해당하며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구체적인 배치 대상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신규 실태조사 여부 및 규모, 추가 연구 등의 필요 여부를 현시점에 가정하기 어려움
 -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2023.4.25.)에서 인력 배치 계획(간호사 1명 당 환자 5명)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2023.1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강화, 대체간호사 지원 신설 등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11개월)까지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음
 - －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 실태조사는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일 뿐, 실제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간호사 확보 수준,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임상 활동률,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정책 대상이 정해진 후 추가 연구 여부 및 규모 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간호사의 경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를 정원으로 하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 마다 1명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